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(소장 및 지소장) 제2항 중 소장은 "지방의무기정, 지방보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좌"를 "지방의무서기관, 지방보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"으로 한다.

부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, 제4조 제2항은 1992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4조(소장 및 지소장)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. ② 소장은 지방의무기정, 지방보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보한다. ③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정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, 감독한다.	제4조(소장 및 지소장) 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······ ②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, 지방보건 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. ③ ··· ···